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입찰"이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노선에 대한 운영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노선"이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가 선정한 노선입찰제 대상노선을 말한다.
3.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할관청이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면허를 말한다.
4.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 공고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로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노선입찰제 대상노선의 인·면허권자인 시장·군수와 동일해야 한다.
5.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노선입찰제 대상노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운송사업자"란 노선입찰제 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기초금액"이란 노선입찰 시 공개하는 금액으로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8조에서 정한 대상노선의 운송원가를 말한다.
8. "협약금액"이란 관할관청과 협상대상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대상노선의 운송원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이하 "노선입찰제"라 한다)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노선입찰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2. 노선입찰제로 운영할 대상노선(이하 "대상노선"이라 한다) 선정
3. 노선입찰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5조(대상노선 수요조사 등)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할관청을 대상으로 노선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관할관청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선입찰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노선 경유 시·군과 재정분담 여부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노선의 선정 등) 도지사는 대상노선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선입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① 관할관청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노선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시·도간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도에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 노선의 효율적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기·종점, 경유 정류소, 운행경로 등 운행계통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소요예산 등) ① 도지사는 대상노선에 대한 소요예산을 재정분담기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소요예산 추정을 위한 운송비용 정산 및 수입금과 관련한 자료를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노선입찰

제9조(입찰공고 등) ① 관할관청은 노선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
4. 제안요청서의 내용
5. 제안서의 제출기한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8. 이행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9. 그 밖에 입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의 개요
2. 기초금액
3. 사업시행의 조건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 제안서의 작성방법 및 규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의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정면허 기간 및 면허의 취소
2. 운행계통
3. 재정지원
4. 운행차량 및 차 내 편의시설
5. 사무실, 차고지, 휴게실, 교육실 등 부대시설
6. 운수종사자, 관리직, 정비직 등 버스노동자 관리
7. 서비스의 계획 및 수준
8.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

제10조(사업신청자의 자격) 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신청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인 자 또는 개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라 노선입찰제 참여를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해야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으며 관할관청은 이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 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노선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3. 그 밖에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산업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행협약 체결) ① 관할관청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포함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된 사업시행조건, 운송사업자의 유의사항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이행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서를 포함한 협약내용을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한정면허의 관리

제13조(한정면허의 발급 및 관리) 한정면허의 발급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며, 면허의 관리는 관할관청이 한다.

제14조(한정면허의 기간 및 갱신) 한정면허 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한정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15조(한정면허의 취소)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경우
3. 운송사업자가 해산결의 및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이행협약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파행운행 하는 등 면허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한 경우
5. 운송사업자가 고의·과실을 통해 도 및 관할관청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를 취소 한 경우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 협의하여 교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노선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운행차량의 요건) ① 제13조에 따른 한정면허 발급 시 운행차량의 요건은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신규차량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차량충당연한 내의 차량이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에 적합한 승합자동차
3. CNG버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차량

② 충전시설의 부재 및 승객편의를 위해 경유차량 및 2층버스 도입이 필요한 경우 도와 협의하여 해당차량을 운행차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관할관청은 교통여건 변화, 승객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개선권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8조(요금체계) 대상노선의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제19조(운송수입금의 관리) 대상노선의 운송수입금은 관할관청, 운송사업자 외의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카드정산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운송사업자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대상노선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월별 운행계획 및 배차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동경기나 행사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수요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운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수종사자의 관리) ①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로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
2. 운수종사자 임금,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항
4.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1. 운송수입금은 관할관청이 정한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며 관할관청의 조치에 따를 것
2.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평가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에 성실히 응할 것
3.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4. 지급되는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5. 노선입찰제의 시행취지를 고려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대상노선 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1.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개시하지 않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6장 재정지원

제23조 (재정지원의 원칙 등) ① 재정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잉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 시 운송수입금, 운송비용 정산, 운행실적 사업계획, 서비스평가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제24조 (협약금액의 조정) 협약금액은 1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하며, 도에서 정한 운전직 인건비 등의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송비용의 재정지원 등) ① 운송비용의 재정지원은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도가 정한 운송원가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라 운송비용을 재정지원 한다.

② 관할관청은 도와 협의하여 운송비용의 재정지원, 지급주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 (운행실적의 확인 및 결정) ① 관할관청은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 및 운송비용 전산시스템과 같은 운행이력자료 등을 통해 운행실적(운행대수,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을 결정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운행실적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운송사업자가 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운행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된 운행실적이 대상노선의 노선, 운행계통, 운행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운송비용 감액정산 및 수입금 손실액(결행, 도중회차 등에 따른 수입손실)에 대한 변상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수입금 잉여분의 사용) ① 관할관청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잉여분에 대하여 시내버스 시설개선, 서비스 향상 등 경기도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잉여분을 사용할 경우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선입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서비스평가

제28조 (서비스평가의 원칙)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대상노선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평가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는 공개 할 수 있다.

제29조 (서비스평가주기) 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도와 협의 후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서비스평가의 기본항목 등) ① 서비스평가는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노력, 이용자 서비스 증진 노력, 노선운영 효율화 노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을 기본항목으로 평가한다.

② 관할관청은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은 도와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31조 (서비스평가대행) 관할관청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서비스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2조 (재정지원금 감액기준) 운송사업자가 조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재정지원금 감액기준과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2.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불응 :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0

제33조 (사업참여 제한) 관할관청은 노선입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등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간 노선입찰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분야별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사업수행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경영상태(재무건전성) ▪대표자 수행경험(실적) ▪차량보험요율 관리 ▪체불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운송시설 확보방안 ▪사업수행계획 ▪경영 및 서비스개선 방안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가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	-	

주1) 평가항목은 입찰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별표 2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지급 및 한정면허 갱신 기준

□ 평가의 대상

○ 평가대상 기간은 최초 운행개시일로부터 1년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한다.

○ 평가의 대상은 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성과이윤 지급기준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성과이윤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점수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70점 미만
성과이윤 배분율	100%	50%	30%	-

□ 한정면허 갱신기준

○ 한정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점수는 한정면허 갱신일자가 도래년도의 직전년도까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가결과에 따른 한정면허 갱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 면허기간 동안 평가결과가 2회이상 D등급 이하인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면허 갱신을 불허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점수	90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70점 미만
갱신여부	갱신			갱신 불가